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월 한도액 초과시 장기요양급여 수가 또는 쌍방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 2024.01.01. 수가 기준

등급		수가 금액(원)	비고
3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39,810	○ 1일 식대 : 7600원 - 1식 3,300*2=6,600원 - 간식 2*500=1,000원
	장기요양 2등급	36,850	
	장기요양 3등급	34,020	
	장기요양 4등급	32,470	
	장기요양 5등급	30,920	
	인지지원등급	30,920	
6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53,360	
	장기요양 2등급	49,420	
	장기요양 3등급	45,620	
	장기요양 4등급	44,070	
	장기요양 5등급	42,500	
	인지지원등급	42,500	
8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66,360	
	장기요양 2등급	61,480	
	장기요양 3등급	56,760	
	장기요양 4등급	55,210	
	장기요양 5등급	53,640	
	인지지원등급	53,640	
10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73,110	
	장기요양 2등급	67,720	
	장기요양 3등급	62,570	
	장기요양 4등급	61,000	
	장기요양 5등급	59,450	
	인지지원등급	53,640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1등급	78,400	
	장기요양 2등급	72,630	
	장기요양 3등급	67,100	
	장기요양 4등급	65,540	
	장기요양 5등급	63,990	
	인지지원등급	53,640	

구분		금액(원)	내역
월 이용 한도	보험료	85%	■ 서비스 이요자의 등급에 따라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 건강보험공단 85% 부담 / 개인 15% 부담
		6~9%	■ 의료급여수급자 · 감경대상자의 경우

			■ 건강보험공단 94~91% 부담 / 개인 6~9% 부담
		0%	■ 기초 생활 수급자 ■ 건강보험공단 100% 부담 / 개인 면제

제10조(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및 보증인)

-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②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 ④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식사·생활상담·조언 및 생활 편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⑦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⑧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 운영 및 급여 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⑨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
- ⑩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퇴소(전원)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

2. 신원 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및 보증인)

- ① 신원 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② 본인부담금 및 식 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 ③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운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 ⑤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파손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시설 청결 의무
- ③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④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 ⑤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 ⑥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4. 이용자 구비 서류

- ① 장기요양 인정서 1부
- ②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
- ③ 복지 용구 급여 확인서 1부
- ④ 처방전과 복용 중인 약품

제11조(계약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초래할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